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통 보

제 목 자문위원에게 월정액 지급 등 자문기관 운영 부적정

기 관 명 광주광역시

내 용

광주광역시에서는 「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」 및 「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규정(훈령)」을 근거로 하여 광주광역시장의 정책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을 자문하기 위하여 정책자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.

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그 자문위원은 상임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「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」가 제정(2016. 10. 1. 시행)되기까지는 내부 훈령(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규정)으로 정책자문관을 운영하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와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 외에 아래 [표1]과 같이 자문관의 상근여부 등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(2016. 3. 7. 개정)하여 아래 [표2]와 같이 자문위원에게 월정액을 지

급하면서 상임으로 운영하고 있다.

[표1] 정책자문관 자문료 등 월정액 지급기준(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규정 별표)

구	분	지급기준
월 2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의 상근(현장활동 포함)이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이 월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		100만원 이내
월 50시간 이상의 상근(현장활동 포함)이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이 월 15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		150만원 이내

[표2] 정책자문관 월정액 지급 현황

<단위 : 천원>

자문분야	자문관 성명	위촉기간	월 지급액	관리부서	비고
공동주택 관리	○○○	'15. 5. 1. ~' 18. 5. 10.	1,000	○○○○과	
도시정원(조경) 조성	○○○	'15. 11. 1. ~' 17. 12. 31.	1,000	○○○○과	
도시공원(화훼) 조성	○○○	'16. 6. 1. ~' 17. 12. 31.	1,000	○○○○과	
5. 18 진실규명	○○○	'17. 2. 1. ~' 18. 1. 3.	1,500	○○○○○○관실	
대외협력	○○○	'14. 8. 25. ~' 17. 8. 2.	1,000	○○○○과	
남북교류협력	○○○	'15. 9. 3. ~' 17. 9. 2.	1,000	○○○○과	
민자도로	○○○	'15. 1. 2. ~' 16. 8. 10.	2,000	○○과	'16.2월부터 1백만원
대외협력	○○○	'14. 9. 22. ~' 15. 3. 30.	1,500	○○○○단	

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은

[통보] 자문위원에 대해 상근여부 등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
사실상 상임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.